



제 424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임호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589호)

2025. 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임 재 금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입목벌채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시 국립생태원 의견 첨부 ...	2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임호선의의원 등 13인

나. 제 안 일 : 2025. 2. 28.

다. 회 부 일 : 2025. 3.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 등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입목벌채 등에 대하여 허가 하기 전에 전문기관을 통해 사전타당성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산림자원 개발의 편의를 위해 개발 허가를 받기 어려운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을 고의로 훼손시키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데, 지난 5년간 생태·자연도 등급을 낮춰 산림 개발을 승인받은 곳 중 채굴장, 골프장 등이 건설되고 있는 사례가 35건에 이르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전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되는 입목벌채 등이 행하여지는 산림에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국립생태원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산림 훼손을 방지하고 산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4제4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입목벌채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시 국립생태원 의견 첨부

개정안은 사전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되는 입목벌채 등이 행하여지는 산림에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국립생태원의 의견을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서에 첨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 4제4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6조의4(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등) ① ~ ③ (생략) <u><신설></u>	제36조의4(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제1항에 따른 사전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되는 입목벌채등이 행하여지는 산림에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1등급 권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의 의견을 들어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서에 첨부하여야 한다.¹⁾</u>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전타당성조사의 절차·기	⑤ -----제4항----- -----

1) 의견 청취 및 결과서 첨부 주체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준·방법, 전문기관에 대한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10ha) 이상의 입목벌채 등에 대하여 전문기관(한국산지보전협회, 한국치산보전협회 및 한국산림기술인회)의 사전타당성조사를 통해 계획 단계부터 생태·경관·산림재해 등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²⁾

그러나 최근 산림개발 허가를 받기 어려운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에서 입목벌채를 실시하여 생태·자연도 등급을 낮게 만든 후 풍력발전 단지, 케이블카, 골프장, 채굴장 등의 승인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³⁾⁴⁾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4(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입목벌채등에 대하여 제36조에 따른 허가 이전에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통해 입목벌채등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사전타당성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산불, 산림병해충, 산사태와 같은 산림재해 발생에 따른 입목벌채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산림청·지자체 목인속 숲가꾸기·벌채로 산림 난개발[2024 국감](2024.10.16., 이태일리)

4) 생태·자연도 이의신청 등급조정 후 개발 사례(참고자료 2 참조)

【 최근 3년간 사전타당성평가 및 생태·자연도 1등급 현황 】

연도	사전타당성평가 대상 총 벌채면적(ha)	사전타당성조사 건수	사전타당성조사 지역 내 1등급 권역 건수
2022	1,451	74	31
2023	1,525	77	25
2024	1,538	81	31

「자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생태적 자연경관적 가치가 우수한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은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발사업에 대한 협의를 할 때에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을 고려하여야 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어 생태·자연도 등급이 낮아지면 산림개발이 용이해지게 됨.⁵⁾⁶⁾

5)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4. “**생태·자연도**”라 함은 산·하천·내륙습지·호소(湖沼)·농지·도시 등에 대하여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하여 제34조에 따라 작성된 지도를 말한다.

제34조(생태·자연도의 작성·활용) ① 환경부장관은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전국의 자연환경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생태·자연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1. **1등급 권역**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이하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라 한다)의 주된 서식지·도래지 및 주요 생태축 또는 주요 생태통로가 되는 지역

나.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경관이 특히 수려한 지역

다. 생물의 지리적 분포한계에 위치하는 생태계 지역 또는 주요 식생의 유형을 대표하는 지역

라.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하고 보전가치가 큰 생물자원이 존재·분포하고 있는 지역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지역에 준하는 생태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④ 생태·자연도는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도에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그 밖에 생태·자연도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등 작성에 필요한 사항과 제1항에 따른 생태·자연도의 활용대상 및 활용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조(생태·자연도의 활용대상 등) ①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자연도의 활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 및 제18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시·도 환경계획

이에 개정안은 입목벌채 등의 사전타당성조사 대상에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이 포함되면 국립생태원의 의견을 듣고 조사 결과에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산림개발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고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을 보전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환경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벌채 허가 시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 대한 환경성 고려가 부재하여, 벌채 방식을 통해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1등급 권역을 고의로 훼손한 후 골프장, 채굴장 등으로 편법 개발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참고로, 환경부는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에 대한 편법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생태·자연도 작성지침」(환경부예규)을 개정하였는바('24.9.11), 그 내용은 생태·자연도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출될 경우 숲가꾸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가 실시된 때로부터 5년간 이전의 자연환경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하도록 하는 것임.⁷⁾⁸⁾

2.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4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계획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3.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영향평가 대상사업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개발계획 중 특별히 생태계의 훼손이 우려되는 개발계획

②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에 대한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생태·자연도의 등급권역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이를 위하여 생태·자연도를 제공하여야 한다.

1. 1등급 권역 :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

2. 2등급 권역 : 자연환경의 보전 및 개발·이용에 따른 훼손의 최소화

3. 3등급 권역 : 체계적인 개발 및 이용

6) 생태·자연도 등급별 작성기준(참고자료 1 참조)

7) 환경부 “생태자연도 1등급지 ‘편법 개발’ 방지 제도개선 완료”(2024.10.1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8) 「생태·자연도 작성지침」(환경부예규) 제19조(이의신청의 처리 등) ① 국립생태원장은 제18조

산림청은 개정안에 대해 ① 환경부 소관 지침이 개정되어('24.9월) 입목벌채를 통해 생태·자연도 등급을 낮춰 개발하려는 행위에 대한 차단이 가능하고, ② 벌채(목재수확)는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경영하기 위한 필수 활동으로 정상적인 임업 활동인 목재수확에서 생태·자연도 의견 첨부는 불필요한 규제 사항이며,⁹⁾ ③ 산림청은 이미 공익용산지와 임업용산지를 구분하여 보존할 산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등의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함.

그러나 환경부는 지침개정에도 불구하고 산림개발에 대한 행위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데에는 한계점이 있으므로 생태적 가치가 매우 우수한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의 환경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현행 법의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인바, 환경부와 산림청의 의견을 고려한 입법정책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23

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권역의 생태·자연도 등급 결정 분야,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 현황, 최신 생태정보 및 이의신청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사분야를 선정하고 관계 분야 전문가와 함께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산불발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의2호에 따른 숲가꾸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산불발생, 숲가꾸기 또는 벌채 전의 자연환경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③ 국립생태원장은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생태·자연도 수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국립생태원장은 제3항에 따라 작성된 생태·자연도안의 등급이 제17조에 따라 정기고시한 생태·자연도안과 차이가 있는 경우 생태·자연도안을 고시하기 전 14일 이상 국민의 열람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국민 열람된 생태·자연도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국립생태원장은 생태·자연도안에 대해 이의신청한 자에게는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9) 관련 임업단체(한국산림기술인회, 합판보드협회, 한국원목생산협회 및 한국임업후계자협회)는 개정안에 대해 산지의 합리적 보전 및 이용을 저해하고, 행정 절차를 과도하게 증가시키는 중복규제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하고 있음.

참 고 자 료

구분	작성기준 (예규 제12조 ~ 제15조)				
1등급	1. 식생 가. 식생보전등급 I 등급에 해당하는 지역 나. 식생보전등급 II 등급에 해당하는 지역 〈식생보전등급 I, II 등급 분류 기준*〉 * 「자연환경조사 방법 및 등급분류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table border="1" data-bbox="335 772 1455 1818"> <tr> <td data-bbox="335 772 454 1444">I 등급</td><td data-bbox="454 772 1455 1444"> (1) 식생천이의 종국적인 단계에 이른 극상의 삼림식생 또는 그와 유사한 자연식생 (가) 식생구조가 안정되어 있고, 종 조성이 해당지역의 잠재자연 식생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음 (나) <u>숲의 형성역사가 오래되어 희소가치가 높은 안정된 식생</u> (다) 국지적으로 분포하고 안정된 식생 (2) 삼림식생 이외의 특수한 입지 등에 형성된 식생(이하 특이식생) 중 인위적 간섭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 자연성이 우수한 식생 (가) 해안사구, 단애지, 자연호소, 하천습지, 습원, 염습지, 석회암 지대, 아고산초원, 자연암벽 등에 형성된 식생. 다만, 이와 같은 식생유형은 규모가 크고 절대보전가치가 있을 경우에만 지도에 표시하고, 보고서 등에 기재 사유를 상세히 기술하여야 함 (3) 특이사항에 의해 보전등급을 상향 조정한 경우 </td></tr> <tr> <td data-bbox="335 1467 454 1818">II 등급</td><td data-bbox="454 1467 1455 1818"> (1) 자연식생이 교란된 후 2차 천이에 의해 다시 자연식생에 가까울 정도로 거의 회복된 상태의 삼림식생 (가) 식생구조가 안정되어 있고, 종 조성이 해당지역의 잠재 자연식생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음 (나) <u>I 등급에 비해 숲의 형성 역사 및 자연성이 다소 낮은 식생</u> (2) 특이식생 중 인위적 간섭의 영향을 약하게 받고 있는 식생 (3) 특이사항에 의해 보전등급을 상·하향 조정한 경우 </td></tr> </table> 2. 멸종위기 야생생물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I 급 종이 서식하거나 생태통로로 이용하는	I 등급	(1) 식생천이의 종국적인 단계에 이른 극상의 삼림식생 또는 그와 유사한 자연식생 (가) 식생구조가 안정되어 있고, 종 조성이 해당지역의 잠재자연 식생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음 (나) <u>숲의 형성역사가 오래되어 희소가치가 높은 안정된 식생</u> (다) 국지적으로 분포하고 안정된 식생 (2) 삼림식생 이외의 특수한 입지 등에 형성된 식생(이하 특이식생) 중 인위적 간섭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 자연성이 우수한 식생 (가) 해안사구, 단애지, 자연호소, 하천습지, 습원, 염습지, 석회암 지대, 아고산초원, 자연암벽 등에 형성된 식생. 다만, 이와 같은 식생유형은 규모가 크고 절대보전가치가 있을 경우에만 지도에 표시하고, 보고서 등에 기재 사유를 상세히 기술하여야 함 (3) 특이사항에 의해 보전등급을 상향 조정한 경우	II 등급	(1) 자연식생이 교란된 후 2차 천이에 의해 다시 자연식생에 가까울 정도로 거의 회복된 상태의 삼림식생 (가) 식생구조가 안정되어 있고, 종 조성이 해당지역의 잠재 자연식생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음 (나) <u>I 등급에 비해 숲의 형성 역사 및 자연성이 다소 낮은 식생</u> (2) 특이식생 중 인위적 간섭의 영향을 약하게 받고 있는 식생 (3) 특이사항에 의해 보전등급을 상·하향 조정한 경우
I 등급	(1) 식생천이의 종국적인 단계에 이른 극상의 삼림식생 또는 그와 유사한 자연식생 (가) 식생구조가 안정되어 있고, 종 조성이 해당지역의 잠재자연 식생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음 (나) <u>숲의 형성역사가 오래되어 희소가치가 높은 안정된 식생</u> (다) 국지적으로 분포하고 안정된 식생 (2) 삼림식생 이외의 특수한 입지 등에 형성된 식생(이하 특이식생) 중 인위적 간섭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 자연성이 우수한 식생 (가) 해안사구, 단애지, 자연호소, 하천습지, 습원, 염습지, 석회암 지대, 아고산초원, 자연암벽 등에 형성된 식생. 다만, 이와 같은 식생유형은 규모가 크고 절대보전가치가 있을 경우에만 지도에 표시하고, 보고서 등에 기재 사유를 상세히 기술하여야 함 (3) 특이사항에 의해 보전등급을 상향 조정한 경우				
II 등급	(1) 자연식생이 교란된 후 2차 천이에 의해 다시 자연식생에 가까울 정도로 거의 회복된 상태의 삼림식생 (가) 식생구조가 안정되어 있고, 종 조성이 해당지역의 잠재 자연식생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음 (나) <u>I 등급에 비해 숲의 형성 역사 및 자연성이 다소 낮은 식생</u> (2) 특이식생 중 인위적 간섭의 영향을 약하게 받고 있는 식생 (3) 특이사항에 의해 보전등급을 상·하향 조정한 경우				

	지역, 이때 생태·자연도 등급은 해당지역이 포함된 격자(250m×250m)를 중심으로 사방 8개의 격자(750m×750m)로 표시한다. 다만, 주거지, 시가지 등을 포함한 개발지 및 농경지는 제외한다. 나.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종이 서식하거나 생태통로로 이용하는 지역, 이때 생태·자연도 등급은 해당지역이 포함된 격자(250m×250m)로 표시한다. 다만, 주거지, 시가지 등을 포함한 개발지 및 농경지는 제외한다. 다. 국제협약 보호지역 1) 자연환경관련 국제협약·기구에 등록된 지역. 다만, 별도관리지역과 중첩되는 지역이 있거나 주거지, 농경지 등 보호지역이 아닌 지역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국가간 협력사업 대상지역. 다만, 별도관리지역과 중첩되는 지역이 있거나 주거지, 농경지 등 보호지역이 아닌 지역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습지 사. 산지습지의 경우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종이 1종 이상 또는 II급 종이 2종 이상 서식하는 산지습지 4. 지형 : 지형보전등급이 I등급인 지역. 다만, 주거지, 시가지 등을 포함한 개발지 및 농경지는 제외한다.
2등급	1. 식생 가. 식생보전등급 III등급에 해당하는 지역 나. 식생보전등급 IV등급에 해당하는 지역 다. 식생 조사가 안 된 지역의 경우 임상도 2영급 이상 지역 〈식생보전등급 III, IV등급 분류 기준*〉 * 「자연환경조사 방법 및 등급분류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III 등급	(1) 자연식생이 교란된 후 2차 천이의 진행에 의하여 회복단계에 들어섰거나 인간에 의한 교란이 지속되고 있는 삼림식생 (가) 식생구조가 불안정하고, 종 조성이 해당지역의 잠재자연식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나) <u>조림기원 식생이지만 자연식생에 가깝게 방치되어 회복 단계에 있는 경우</u> (2) 특이식생 중 인위적 간섭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 식생 (3) 해당 지역에 맞는 식생생태학적 특성을 고려한 식재의 경우 (4) 특이사항에 의해 보전등급을 상·하향 조정한 경우
	IV 등급	<u>인위적으로 조립된 식재림</u>
2. 습지		
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1종 서식하는 산지습지		
3등급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2등급 권역 및 별도관리지역을 제외한 지역 〈식생보전등급 V등급 분류 기준*〉 * 「자연환경조사 방법 및 등급분류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V 등급	(1) 인위적 영향 등을 받아 심하게 훼손된 식생 (가) 2차적으로 형성된 키가 큰 초원식생 등 (나) 2차적으로 형성된 키가 낮은 초원식생 등(골프장, 공원묘지, 목장 등) (다) 과수원이나 유실수 재배지역 및 묘포장, 조경식재지 등 (라) 논·밭 등의 경작지 (마) <u>크게 훼손된 후 형성된 초기 2차림(벌채지 등)</u> (2) 식생이 없는 지역 (가) 주거지, 시가지 등의 개발지, 나지 등 (나) 강, 호수, 저수지 등에 식생이 없는 수면과 그 하안 및 호안 (3) 특이사항에 의해 보전등급을 하향 조정한 경우
별도 관리 지역	다른 법률에 따라 보전되는 지역중 역사적·문화적·경관적 가치가 있는 지역이거나 도시의 녹지보전 등을 위하여 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1.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연공원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7.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8.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9.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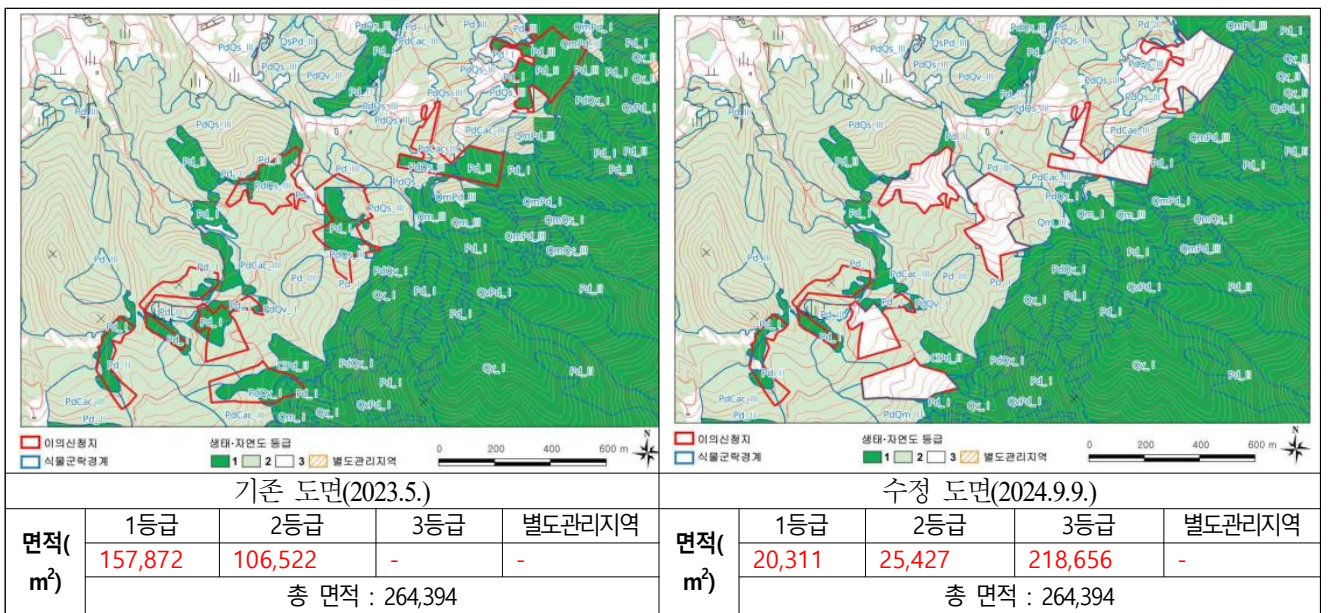
- ※ 「자연환경조사 방법 및 등급분류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식생보전등급 분류 기준에 따라 벌채지는 식생보전등급 V등급으로 구분되어 생태·자연도 3등급이 됨.
- ※ 벌채 시 5등급이 되었다가 조림 사업을 하면 4등급이 되고, 산림을 잘 관리해 임목축적(산림 내 나무의 양, m³)이 증가하면 3→2→1등급이 됨.

참고2

생태·자연도 이의신청 등급조정 후 개발 사례 (자료: 환경부)

□ 골프장 개발관련 사례

- 이의신청 개요
 - 신청지역: 전라남도 구례군
 - 신청 일: 2024.4.
 - 사업목적: 골프장
- 산림사업유형: 벌채(일부 모두베기)
- 등급변경 현황(1,2등급 → 1,2,3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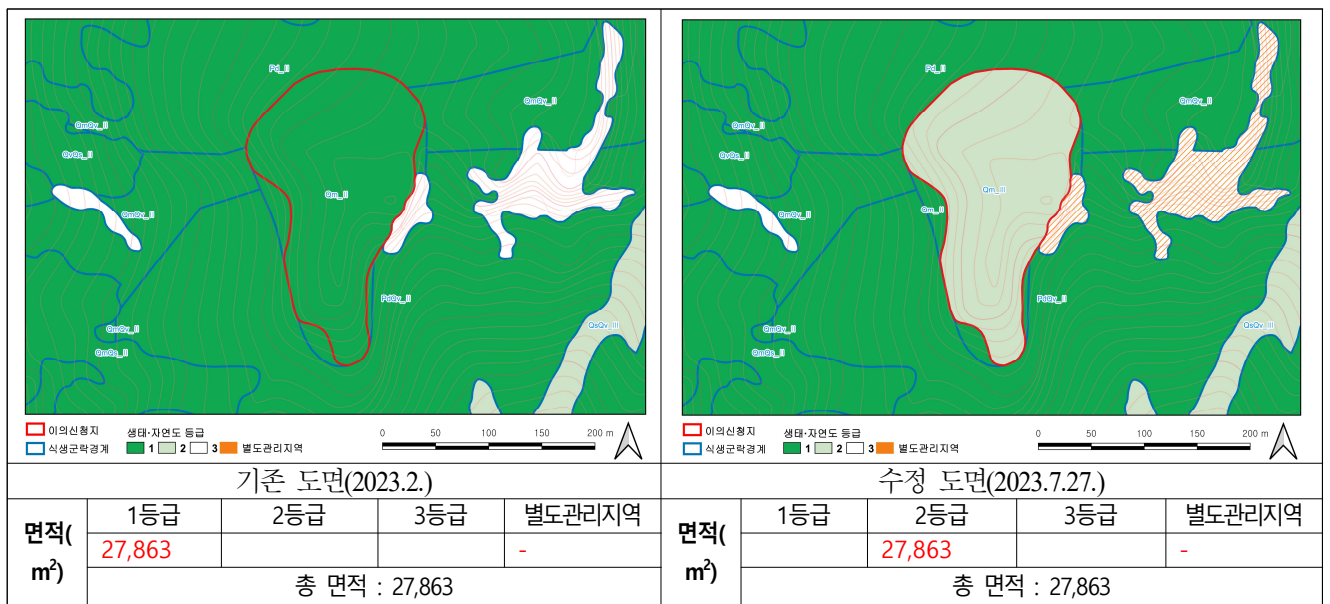


- 관련 기사
 - 지리산 자락 소나무 1만그루 대규모 벌채(2023.5.2. 연합뉴스)
 - ※ 관련링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917471?sid=102>
 - 지리산 정상부에 골프장 추진..축구장 29개 소나무 잘렸다(2023.6.24.중앙일보)
 - ※ 관련링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89020?sid=102>



□ 케이블카 개발관련 사례

- 이의신청 개요
 - 신청지역: 경상북도 문경시
 - 신 청 일: 2023.4.
 - 사업목적: 케이블카
- 산림사업유형: 벌채(모두베기)
- 등급변경 현황(1등급 → 2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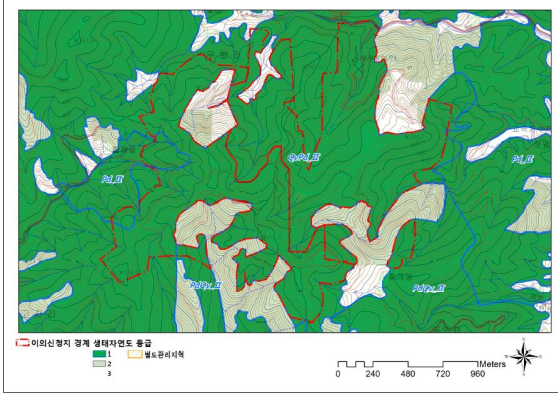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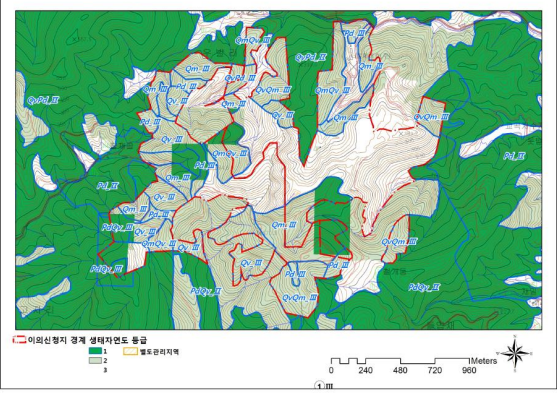


- 관련 기사
 - 문경시, ‘숲가꾸기’한다면서 숲을 고의로 망쳐놨다?(2024.1.23. 경향신문)
 - ※ 관련링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75039?sid=102>
 - 케이블카 예정지 ‘환경평가’위해 1등급 나무 벤 문경시?(2024.1.26. 한겨레21)
 - ※ 관련링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6/0000049345?sid=102>



□ 채석장 개발관련 사례

- 이의신청 개요
 - 신청지역: 강원도 삼척시
 - 신청 일: 2015.9.
 - 사업목적: 채석장
- 산림사업유형: 벌채(모두베기)
- 등급변경 현황(1,2,3등급 → 1,2,3등급)

									
기존 도면(2007.4.)					수정 도면(2016.9.)				
면적(m²)	1등급	2등급	3등급	별도관리지역	면적(m²)	1등급	2등급	3등급	별도관리지역
	2,254,427	164	1,075	-		231,736	1,240,825	783,105	-
	총 면적 : 2,255,666					총 면적 : 2,255,666			

- 관련 기사
 - 생태자연 1등급 산림 무분별한 벌목(2014.1.15. YTN)
- ※ 관련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4SbWCdSsRV4>

